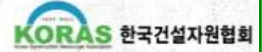


협 회 일 보



2023년 이렇게 바뀝니다.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

2023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및 고용·노동 등 분야·부처별 주요 정책 및 제도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, 세부 내용은 ‘기획재정부(whatsnew.moef.go.kr)’ 또는 ‘협회 홈페이지(www.koras.co.kr)-공지사항’에서 확인*하실 수 있습니다.



<관련자료 표지>

* 관련자료 :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(기획재정부)

환경 · 대기 · 자원순환 분야

1.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

- [주요내용] 중간처리업자에게 수집·운반차량의 위치정보와 사업장 진입로·계근대·보관장소 등의 영상정보 전송하는 의무 부여
- [관련법률]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3항 및 「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(환경부고시 제2022-106호)
- [시행일] '22년 10월 1일부터
 - ※ 제도시행 후 1년간 행정처분 유예('23.3.31일까지 장비 설치 완료 시)
 - ※ 임시차량의 위치정보(GPS) 전송방법 개선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방안 협의 중(환경부)

2.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

- [주요내용]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4등급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(굴착기·지게차)까지 확대 시행
- [시행일] '23년 3월 1일부터
 - ※ 소유차량 등급조회는 '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(www.mecar.or.kr)'에서 확인 가능

금융 · 재정 · 조세 분야

1.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

- [주요내용]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

- 기본공제 :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

구분	공제액(단위 : 만원)			
	중소(공제기간 : 3년)		중견 (공제기간 : 3년)	대기업 (공제기간 : 2년)
	수도권	지방		
상시근로자	850	950	450	-
청년정규직*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여성 등	1,450	1,550	800	40

* 청년 범위 : 15~34세

- 추가공제 : 해당 인원 1인당 세액공제(공제기간 : 1년)

구분	공제액(단위 : 만원)	
	중견	중소
정규직 전환자, 육아휴직 복귀자	1,300	900

- [관련법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9조의8 등
- [시행일] '23년 1월 1일부터

※ 단, '23년 및 '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(중복 불가)

2.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등

- [주요내용]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(폐기물 처리업 등)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

<특별세액 감면비율>

구분	업종	수도권 내	수도권 외
중기업	도매 및 소매업, 의료업	-	5%
	지식기반산업	10%	15%
	기타 업종 (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)	-	15%
소기업	도매 및 소매업, 의료업	10%	
	기타 업종 (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)	20%	30%

※ 폐기물 처리업 중소기업 구분기준 : (중기업) 평균매출액 800억 이하 / (소기업) 평균매출액 30억 이하

- [관련법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조
- [시행일] '23년 1월 1일부터

보건·복지·고용·교통 분야

1.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제도 시행

- [주요내용]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 의무 부여
 - ※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, 설치·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
- [관련법률]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96조의2
- [시행일] '23년 8월 18일부터

2. 최저임금액 인상

- [주요내용] '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,620원으로 인상 (전년대비 460원 인상)
- [관련법률] 「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」 (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67호)
- [적용기간] '23년 1월 1일 ~ '23년 12월 31일

3.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

- [주요내용] 건설기계·장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
 - <관련기준 주요내용>
 - ① 후사경·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·작동상태 확인
 - ②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
 - ③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
- [관련법률]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21조의2 등
- [시행일] '23년 7월 1일

4. 도로교통 관련 준수 의무 신설 등

- [주요내용]
 - ①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
 - ※ 범칙금(승용차의 경우 3만원)·벌점(10점) 부여
 - ②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'일시정지' 의무를 규정하고 '우회전 삼색등'을 신설 등
 - ※ 일시정지 :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
- [관련법률] 「도로교통법」 제14조 및 제27조 등
- [시행일] ① '23년 1월 1일부터 ② '23년 1월 22일부터